

2005. 6. 24 (금) 15:00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2004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연 찬)

2004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6.24)

1. 검토경과

- 가. 2005.6. 9 : 사천시장 제출
- 나. 2005.6. 10 : 총무,산업건설위원회 회부(의안번호 28호)
- 다. 2005.6. 16 :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및 예비 심사
- 라. 2005.6. 24 : 제9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2,3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함.

3. 주요내용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
 - 세입결산액 : 391,481,935천원
 - 세출결산액 : 280,648,374천원
 - 세계잉여금 : 110,833,561천원

이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80,488,80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44,753천원임

[회계별 결산내역]

○ 일반회계

- 세입결산액 : 353,853,407천원
- 세출결산액 : 264,256,041천원
- 세계잉여금 : 89,597,366천원

예산회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73,648,063천원 (자금없는 이월금 4,000,000천원 미포함)과 국.도비 보조금 571,01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378,285천원임.

○ 특별회계(공기업상수도사업 외 11개 특별회계)

- 세입결산액 : 37,628,528천원
- 세출결산액 : 16,392,333천원
- 세계잉여금 : 21,236,195천원

이중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6,269,727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66,468 천원임.

<기타사항>

- 2004회계연도 결산서
- 2004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 2004회계연도 사천시 결산검사 의견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세 계 잉여금 (가-나)	잉여금 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액반납 이 월	순세계 잉여금
계	391,482	280,648	110,834	35,117	8,007	36,794	571	30,345
일반회계	353,853	264,256	89,597	30,600	7,850	35,198	571	15,378
특별회계	37,629	16,392	21,237	4,517	157	1,596	-	14,967

○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나)	미수납액 (다=가-나)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408,379,120	408,157,581	402,234,852	5,922,729	98.5
계(당해연도)	356,320,873	360,523,303	353,853,407	6,669,896	98.1
지방세 수입	24,766,070	28,636,451	25,433,813	3,202,638	88.8
세 외 수 입	172,807,455	176,597,083	173,129,825	3,467,258	98.0
지방 교부세	81,217,000	81,773,089	81,773,089	0	100
지방 양여금	11,529,421	11,211,328	11,211.328	0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83,973	6,047,536	6,047,536	0	100
보 조 금	55,265,954	55,606,816	55,606,816	0	100
지 방 채	4,651,000	651,000	651,000	0	100

○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나)	집행잔액 (가-나-다)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408,379,120	249,002,237	145,808,418	13,568,465	60.9
당해연도(계)	356,320,873	264,256,041	77,648,063	14,416,769	74.1
일반 행정비	75,300,173	58,248,521	15,667,434	1,384,218	77.3
사회 개발비	110,631,767	73,821,846	33,325,089	3,484,832	66.7
경제 개발비	159,705,747	128,346,777	28,650,676	2,708,295	80.3
민 방 위 비	507,556	450,322	0	57,234	88.7
지원및기타 경 비	10,175,629	3,388,575	4,864	6,782,190	33.3

○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 수 결정액(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다-나)	수납비율 (%)(다/나)	
전 년 도	28,118,870	30,294,383	29,514,293	780,090	97.4	
당 해 연 도	34,313,461	38,932,959	37,628,528	1,304,431	96.6	
공기 업	상수도사업	17,922,369	19,011,382	18,791,586	219,796	98.8
	하수도사업	1,575,777	3,234,277	2,459,576	774,701	76.0
기 타 특 별 회 계	하수도사업	864,743	2,249,067	2,249,067	0	100
	주택사업	502,592	533,618	468,489	65,129	87.7
	토지구획 정리사업	2,400,495	2,698,450	2,532,662	165,788	93.8
	의료보호 기금조성	781,058	781,509	780,364	1,145	99.8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사업	719,490	743,402	712,090	31,312	95.7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348,806	375,050	333,142	41,908	88.8
	화력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126,320	1,224,356	1,224,356	0	100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2,182,040	2,182,627	2,182,627	0	100
	농공지구 조성사업	4,569,810	4,576,612	4,571,960	4,652	99.8
	수질개선사업	1,319,961	1,322,609	1,322,609	0	100

○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가)	지출액(나)	이월액 (다)	집행잔액 (가-나-다)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28,118,870	15,355,647	3,560,962	9,202,261	54.6
당 해 연 도		34,313,461	16,392,333	6,269,727	11,651,401	47.7
공 기 업	상수도 사업	17,922,369	11,516,259	2,889,419	3,516,691	64.2
	하수도 사업	1,575,777	550,385	0	1,025,392	34.9
기 타 특 별 회 계	하수도사업	864,743	667,004	0	197,739	77.1
	주택사업	502,592	183,557	0	319,035	36.5
	토지구획정리 사업	2,400,495	227,000	0	2,173,495	9.4
	의료보호기금	781,058	780,364	0	694	99.9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관리	719,490	57,122	0	662,368	7.9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348,806	220,000	0	128,806	63.0
	화력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1,126,320	993,094	0	133,226	88.1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2,182,040	7,382	0	2,174,658	0.3
	농공지구 조성사업	4,569,810	381,367	2,878,000	1,310,443	8.3
수질개선사업	1,319,961	808,799	502,308	8,854	61.2	

○ 예비비 세출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비율(%)
일 반 회 계	6,649,922	1,348	1,049	0.02

4. 검토의견

-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려는 것으로
- 2005. 5. 10 ~2005. 5. 29(20일간)까지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의원이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회계결산지침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 및 개선 사항 11개 항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 또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수범사례 1건인 보험금 압류은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한 징수 기법으로 잘 활용하여 고질채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 총 세입은 예산현액 356,320,873천원 대비 101%인 360,523,303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중 353,853,407천원을 수납하여 98.1%의 양호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에 수납액 402,234,852 천원에 비해 현년도에는 12% (48,381,445천원)가 줄어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 노력과 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세수 증대에도 많은 노력을 가져야 하겠음.
 - 세입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줄었으며 미수납액 6,669,896천원중 결손처분액 978,284천원을 제외하고 5,691,612천원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5%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완벽한 체납사유분석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 매년 반복되어 오는 것으로 미수납 대부분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징수율이

지방세 19%, 세외수입 6%로 저조함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하고 원인별 체납사유 분석후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정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입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이 전체 세외수입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율이 현년도 38.4%, 과년도 5.6%로 낮아 담당부서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해연도 징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징수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 총 예산현액 356,320,873천원중 74.1%인 264,256,041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7,648,063천원이며, 집행잔액이 14,416,769천원으로써 전년도의 60.9%보다 높은편이며 재정운용면에서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에 투자비중이 높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 예산현액의 4%에 해당되는 14,416,769천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 처리한 것은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여, 사업추진 부진, 사업 수요 예측 부정확등으로 세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 됨,
-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체 예산절감을 위해 투자사업 5%, 경상 경비 10%에 대한 예산 절감노력도 있었으나, 대부분 사업성 결여등으로 불용액이 많아 앞으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변경이나 계획변경이나 여건변화등으로 시행이 불필요 하거나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삭감등 조치를 하도록 개선되어야 될 것이며,

-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심사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여 불용액을 줄여 나가게 하여야겠음
- 예산 현액 356,320,873천원중 21.8%인 다음연도 이월액 77,648,063천원은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약 지연, 계속비 이월 및 기타사유로 과다 이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도 많아 향후 사업계획수립시는 사업의 효과성, 시기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 발주 하고 우선순위 조정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며, 가급적 당해 연도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이월사업의 최소화가 요망됨
- 예산전용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사천시재무회계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11월 3일 직원체육대회시 행사지원비를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시상품 구입을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포상금 지출 규정에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전용 집행시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004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한 변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의 8건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시행중인 사업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 조치한 것은 부적합함으로 지방재정법의 이월사업 구분 개념 정리가 필요함
- 1997.12.22일자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처분 인가로 발생된

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216,959천원)을 관리대장에 미등재하고 채권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즉시 채권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채권소멸방지를 위한 독촉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2의 규정에 의거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나,
- 2004.12월에 지원된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사업(1,200천원),법무부범죄 예방사천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4,000천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결정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시민단체의 재원배분 형평성 문제제기를 사전해소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반기, 분기등으로 확대운영하여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함이 필요함.

〈예비비〉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편성하고 그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3.2%에 해당하는 6,649,92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태풍“민들레” 피해 사유시설(주택)복구 및 태풍 “메기” 어선피해복구비 29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총 2건에 1,049천원을 지출하고 6,648,873천원은 불용처리 되어 집행비율이 0.02%에 불과하였는데,
- 앞으로 예산낭비억제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양도록 개선이 요구됨

〈특별회계〉

○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분야 38,932,95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7,628,528천원의 수납(수납율 96.6%)으로 전년도(97.4%)와 비슷한 수준이며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등 12개 전분야의 수납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과 해당 부서의 노력도 크다 하겠음.
- 특별회계 중 징수율이 다소 낮은 주택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독려하여 체납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부담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 예산현액 34,313,461천원 대비 16,392,333천원(집행율 47.7%)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예산현액 28,118,870천원 대비 54.6%(집행율)에 해당하는 15,355,647천원을 지출하여 2004회계연도중 지출은 전년도보다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집행율이 낮은 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9.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7.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0.3%),농공지구조성사업(8.3%) 등 4개 특별회계는 극히 미진하여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54.2%에 해당하는 6,320,964천원으로써 이는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사료되고 있음으로 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4개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운영전반에 대한 진단실시등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 동 승인안의 일부 지적 및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 ①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116호)의

-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예산규모(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은 제외)의 1.0%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회계(교육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관리자는 매사업년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